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46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 ᆞ경, 김기덕, 박승진, 서준오, 유정희, 이상훈, 이용균, 이원형, 최기찬 의원(9명)
찬 성 자 : 김규남, 송경택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현행 조례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자격, 업무범위,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제8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)	제6조(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[1]에 규정 되어있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의무를 개별 조례에 명문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	☏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)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, **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**

1. 일반자문 :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준용
2.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% 이내